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

의 안 번 호	3162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18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리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비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·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능률을 제고하고,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증진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1. 관련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○ 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(감사)

2. 감사개요

○ **감사주체: 하남시의회(각 상임위원회)**
- 감사위원회 편성: 2개 감사위원회(자치행정위원회, 도시건설위원회)

○ **감사기간: 2025. 11. 20.(목) ~ 11. 28.(금) [11일간: 토·일 포함]**

○ **감사대상기관**
- 시,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남도시공사, 하남시 출자·출연기관
-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○ **주요감사 대상업무**
-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자료 등(2024. 5. 1. ~ 2025. 9. 30.)

○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○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

3.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안

일 시	자치행정위원회	도시건설위원회
11. 20.(목))	(11:00) 본회의 → (14:00) 현장확인	
11. 21.(금) 10:00	【보좌기관 소관】 - 법무감사관/공보담당관 【기획재정국 소관】 - 기획조정과/회계과 - 세정과/세원관리과	
11. 24.(월) 10:00	【자치행정국 소관】 - 자치행정과/민원여권과 - 정보통신과/체육진흥과	【도시주택국 소관】 - 도시정책과/건축과 - 주택과/토지정보과
11. 25.(화) 10:00	【경제문화국 소관】 - 투자유치과/지역경제과 - 청년일자리과/문화정책과	【교통건설국 소관】 - 교통정책과/건설과 - 도로관리과/차량등록과
11. 26.(수) 10:00	【복지국 소관】 - 복지정책과/노인장애인복지과 - 보육정책과/여성아동과	【안전환경국 소관】 - 안전정책과/환경정책과 - 공원녹지과/식품위생농업과
11. 27.(목) 10:00	【평생교육원 소관】 - 평생교육과/도서관정책과/도서관운영과 【출자출연기관】 - 하남문화재단 - 하남시자원봉사센터/하남교육재단	【미래도시사업단 소관】 - 도시전략과/광역교통과 【보건소 소관】 - 보건정책과/건강증진과/미사보건센터
11. 28.(금) 10:00		【친환경사업소 소관】 - 자원순환과/상수도과/하수도과 【하남도시공사】 - 하남도시공사
12. 1.(월)~ 2.(화)	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	

4. 별　　첨

가.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

나.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

다. 증인선서문

별첨 가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

(자치행정위원회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행정사무감사 대상 :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

○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: 따로 붙임

3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○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○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(감사)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

(자치행정위원회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, 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명확히 분석하고,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.

2. 기　　간 : 2025. 11. 20.(목) ~ 11. 28.(금) [9일간]

3.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내용

○ 법무감사관,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
○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전반
○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
○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
○ 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
○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
○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
○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 전반
○ 하남교육재단 소관 업무 전반

4. 감사반 편성

감사위원장	감사위원	사무보조자
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	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 (위원장 제외)	자치행정전문위원실 • 전문위원 1명 • 담당직원 2명 • 속기사 1명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시	대 상 기 관	장 소	비고
11. 21.(금) 10:00	**【보좌기관 소관】** - 법무감사관/공보담당관 **【기획재정국 소관】** - 기획조정과/회계과 - 세정과/세원관리과	상임위회의실1	
11. 24.(월) 10:00	**【자치행정국 소관】** - 자치행정과/민원여권과 - 정보통신과/체육진흥과	상임위회의실1	
11. 25.(화) 10:00	**【경제문화국 소관】** - 투자유치과/지역경제과 - 청년일자리과/문화정책과	상임위회의실1	
11. 26.(수) 10:00	**【복지국 소관】** - 복지정책과/노인장애인복지과 - 보육정책과/여성아동과	상임위회의실1	
11. 27.(목) 10:00	**【평생교육원 소관】** - 평생교육과/도서관정책과/도서관운영과 **【출자출연기관】** - 하남문화재단/하남시자원봉사센터 - 하남교육재단	상임위회의실1	

※ 상기일정은 회기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시 증인출석 등 관련사항은 연계되는 것으로 함.

6. 증인 출석요구

○ **관계규정 :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제4항**

○ **일시 및 장소 : 감사일정 및 장소 참조**

○ **출석요구대상자 : 30명**

- **부시장, 법무감사관, 공보담당관**
- **기획재정국장,** 기획조정과장, 회계과장, 세정과장, 세원관리과장
- **자치행정국장,** 자치행정과장, 민원여권과장, 정보통신과장, 체육진흥과장
- **경제문화국장,** 투자유치과장, 지역경제과장, 청년일자리과장 문화정책과장
- **복지국장,** 복지정책과장, 노인장애인복지과장, 보육정책과장, 여성아동과장
- **평생교육원장,** 평생교육과장, 도서관정책과장, 도서관운영과장
- **하남문화재단 대표,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, 하남교육재단 대표**

7. 진행순서

가. 감사선언 및 위원장 인사

나. 감사실시(부서별)

- 사　　회 : 위원장
- 증인선서 : 증인(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)
- 질　　의 : 위원장 또는 위원
- 답변 및 증언 : 증인(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)

다. 감사종료 인사 및 선언 : 위원장

8. 감사자료 제출 요구

○ 관계규정 :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, 제49조

○ 제출서류 :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자료 등(감사 자료 요구목록 별첨)

○ 작성기준 : 2024. 5. 1. ~ 2025. 9. 30.

※ 별도 범위 없을 시

○ 제출기한 : 2025. 10. 24.까지

○ 제 출 처 : 의회사무국

○ 감사자료의 추가제출 요구

-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또는 실시함에 있어 이미 제출된 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참고 자료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

9.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
○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(감사의 목적, 기간 등),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견, 건의사항,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.

10. 기타 참고사항

○ 감사일정 조정, 감사반 변경, 보충자료 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,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, 이미 감사한 사항이라도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 가능

붙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(별첨)

별첨 나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

(도시건설위원회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행정사무감사 대상 :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

○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: 따로 붙임

3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자치법」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○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○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제2조(감사)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
(도시건설위원회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, 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명확히 분석하고,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.

2. 기　　간 : 2025. 11. 20.(목) ~ 11. 28.(금) [9일간]

3.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내용

○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
○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
○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
○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
○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
○ 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
○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

4. 감사반 편성

감사위원장	감사위원	사무보조자
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	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(위원장 제외)	도시건설전문위원실 • 전문위원 1명 • 담당직원 2명 • 속기사 1명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시	대 상 기 관	장 소	비고
11. 24.(월) 10:00	**【도시주택국 소관】** - 도시정책과/건축과 - 주택과/토지정보과	상임위회의실2	
11. 25.(화) 10:00	**【교통건설국 소관】** - 교통정책과/건설과 - 도로관리과/차량등록과	상임위회의실2	
11. 26.(수) 10:00	**【안전환경국 소관】** - 안전정책과/환경정책과 - 공원녹지과/식품위생농업과	상임위회의실2	
11. 27.(목) 10:00	**【미래도시사업단 소관】** - 도시전략과/광역교통과 **【보건소 소관】** - 보건정책과/건강증진과/미사보건센터	상임위회의실2	
11. 28.(금) 10:00	**【친환경사업소 소관】** - 자원순환과/상수도과/하수도과 **【하남도시공사】** - 하남도시공사	상임위회의실2	

※ 상기일정은 회기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시 증인출석 등 관련사항은 연계되는 것으로 함.

6. 증인 출석요구

○ **관계규정 :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제4항**

○ **일시 및 장소 : 감사일정 및 장소 참조**

○ **출석요구대상자 : 27명**

- **도시주택국장,** 도시정책과장, 건축과장, 주택과장, 토지정보과장
- **교통건설국장,** 교통정책과장, 건설과장, 도로관리과장, 차량등록과장
- **안전환경국장,** 안전정책과장, 환경정책과장, 공원녹지과장, 식품위생농업과장
- **미래도시사업단장,** 도시전략과장, 광역교통과장
- **보건소장,** 보건정책과장, 건강증진과장, 미사보건센터장
- **친환경사업소장,** 자원순환과장, 상수도과장, 하수도과장
- **하남도시공사 대표**

7. 진행순서

가. 감사선언 및 위원장 인사

나. 감사실시(부서별)

- 사　　회 : 위원장
- 증인선서 : 증인(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)
- 질　　의 : 위원장 또는 위원
- 답변 및 증언 : 증인(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)

다. 감사종료 인사 및 선언 : 위원장

8. 감사자료 제출 요구

○ 관계규정 :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, 제49조

○ 제출서류 :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자료 등(감사 자료 요구목록 별첨)

○ 작성기준 : 2024. 5. 1. ~ 2025. 9. 30.

※ 별도 범위 없을 시

○ 제출기한 : 2025. 10. 24.까지

○ 제 출 처 : 의회사무국

○ 감사자료의 추가제출 요구

-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또는 실시함에 있어 이미 제출된 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참고 자료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

9.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
○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(감사의 목적, 기간 등),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견, 건의사항,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.

10. 기타 참고사항

○ 감사일정 조정, 감사반 변경, 보충자료 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,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, 이미 감사한 사항이라도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 가능

별첨 다

붙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(별도 송부)

별첨 다

선 서

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.

2025년 11월 일

증인 직위 :

성명 : (서명)